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개정 2017. 10. 26.>

■ 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別紙第63号書式] <改正2017. 10. 26.>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二輪自動車の使用届出

접수 번호 受付番号	접수 일시 受付日時	발급 일시 発行日時	처리 기간 즉시 処理期間 即時
소유자 所有者	성명(명칭) 氏名 (名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法人登録番号)	
	주소 住所	(휴대)전화번호 (携帯) 電話番号	
이륜자동차 二輪自動車	차명 (예시 : 데이스타 250) 車名 (例 : デイスター250)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総排気量または最高定格出力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使用本拠地 (住民登録地、法人などの主たる事務所又は支店)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自動車管理法」 第48条第1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99条第1項の規定により、上記のとおり届出をいた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申請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または捺印)

생년월일 生年月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市長・郡守・区庁長又は邑・面・洞・出張所長 殿

첨부 서류 添付書類	수수료 手数料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1. 所有権を証明する書類(第2号から第4号までの書類をもって所有権を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提出は不要です。) 1部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二輪自動車の制作証(新規製作・組立した二輪自動車の場合にのみ添付します。) 1部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関税法施行令」 第116条第2項の規定による輸入申告済証またはこれに代わる税関の証明書(輸入した二輪自動車の場合にのみ添付します。)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二輪自動車使用廃止の証明書(使用を廃止した二輪自動車を再届出する場合にのみ添付します。)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実測確認書(該当する場合にのみ添付します。)	없음 なし

### 유의사항 注意事項

-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 二輪自動車の運行には、使用届出を出して二輪自動車番号の指定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自動車管理法」 第48条第1項)  
- 上記の事項に違反した場合には、関連規定に基づいて過料が科せられます。(「自動車管理法」 第84条第2項第18号)
-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携帯)電話番号は、あなたの二輪自動車の管理に必要な事項を案内・サポートする目的で利用されますので記入をお願いします。なお、番号を変更された場合には管轄申告官庁にご連絡ください。ただし、本人が希望しない場合は、書かなくても構いません。